

아리수애 환경을 품다, 수돗물애 건강을 담다.



# 서울특별시



수신    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(시설과장)  
(경유)

제목      제479차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결과 통보

1. 시설과-688(2018.2.20.)호와 관련입니다.
2. 귀 기관에서 요청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.
  - 가. 건 명 : 2018년 우포늪 생태체험장내 서울숲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
  - 나. 심사번호 : 2018120330
  - 다. 심 사 일 : 2018.2.20.
  - 라. 심사결과 : 적정(조건부)

[유의사항]

-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는 “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” 또는 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1조”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주체(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자)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에 한함.
- 타당성심사 및 용역발주 심의결과를 반영한 최종 설계내역서와 과업내용서는 용역발주전에 기술용역 관리시스템(타당성심사)에 등록(메일송부)하여 심사업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.
- ※ 용역발주전 첨부된 “기술용역 추진시 사전 확인사항”을 반드시 확인 후 시행할 것

붙 임 : 제479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



주무관	<b>최영준</b>	조경심사팀장	02/20 <b>임상빈</b>
협조자	기술관리팀장	<b>代유현선</b>	

시행    기술심사담당관-3219      ( 2018.2.20. ) 접수    시설과-691      ( 2018.2.21. )  
 우 04524    중구 세종대로 110(태평로1가 31) 9층      / http://infra.seoul.go.kr  
 전화 02-2133-8586    /전송 02-2133-0745    / cquick@seoul.go.kr      / 대시민공개

# 제479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

- 건 명 : 2018년 우포늪 생태체험장내 서울숲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
- 심 사 일 : 2018. 2. 20.
- 요청부서 :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
- 사업개요
  - 용역비 : 14,960천원(사업비 250백만원)
  -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60일
  - 사업규모 : 3,500㎡(다층식재림, 수생식물군락지 보존, 휴게시설 설치 등)
- 심사결과 : 적정(조건부)

심사항목	심사내용
1. 용역의 필요성 (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) □ 대상 ■ 미대상	○ 기존 식생을 활용한 휴식공간 조성 및 산책로 정비를 통한 생태복원 등 위한 친환경 설계에 자연생태, 경관, 이용안전 등 전문성이 요구되어 용역시행 일림 : 주요 공종이 자체시행대상 용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부서 자체추진
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- 가락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	○ 용역비 조정 : 14,960천원→14,952천원(8천원 감, 0.05%) - 공사비율에 의한 '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' 요율 5.87% 적용 - 손해배상보험료는 실시설계 산출금액에 0.502% 요율 적용 ○ 전문가 자문 등 기타 추가경비는 자체 검토 반영 ○ 대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정대가를 적용하고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할 것
3. 조건부여 이행 확인사항 - 용역성과품공개,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의절차이행 등	○ 타당성심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내역서와 과업내용서는 용역 발주 전에 기술용역관리시스템(타당성심사)에 등록하여 심사업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.
4. 과업의 내용,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	○ 기본설계과업은 추진하되 기본설계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는 과업으로 과업내용서를 기본설계 과업과 분리하여 작성할 것 ○ 설계용역 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 참여기술자간 합동 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것(건설사업 업무추진프로세스 개선방안, 행정2부시장방침 제301호, '14.10.13.) ○ 과업내용서에 아래 사항을 추가할 것 - 최종 용역보고서에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증권을 수록해야 한다. (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업무 개선방안 행정2부시장방침 제349호, '15.10.17.)
5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- 용역지역 중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-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	○ 용역발주시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여 용역수행중 과업 범위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바람

## 기술용역 추진시 사전 확인사항

	확 인 항 목	세 부 내 용
<b>용역 시스템</b>	<b>1. 기술용역관리시스템에 추가(첨부) 등록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용역발주 전 최종 수정된 설계내역서 및 과업내용서를 기술용역관리 시스템에 추가 등록</li>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※ 기술심사담당관 600호(13.1.14) : 용역관리 시스템 개선</li> </ul>
<b>입찰전</b>	<b>2.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</b> - 심의절차 이행 -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발주부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입찰 시행전에 반드시 건설기술 심의절차 이행</li> <li>- 단, 서울시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과 모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심사담당관과 사전 서면 협의로 건설기술심의 대체</li>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※ 건설기술진흥법 제19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기관은 제외(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절차 등 이행)</li> </ul>
<b>과업착수 보고서 제출시 확인</b>	<b>3. 용역실적 등재·관리</b> - 용역계약현황 통합관리시스템 등재확인(www.cems.kr) - 담당자는 착수보고서 접수시 “건설기술용역실적확인서” 첨부 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용역실적 등재관리 절차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실적확인서 제출(PQ)</p> <pre>                     graph TD                         A[용역체임 기술자] -- ① 등재 --&gt; B[통합관리 시스템 www.ce.ms.kr]                         B -- ③ 확인 --&gt; C[발주청 기관 등]                         C -- 실적조회 --&gt; B                         B -- 증명발급 --&gt; A                         D[관리자 한국건설 기술관리 협회] -- ② 검토 --&gt; B                         E["보완요청 (미비시)"] --&gt; D                         F["확인요청 (유선)"] --&gt; D                         G["실적확인서 제출(PQ)"] --&gt; C                     </pr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* ②검토·③확인결과 오류발견 시, 사유기입 반려조치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(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System:CEMS) : 건설기술용역 사업실적 및 참여기술자 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는 전자운영체계</li> <li>- 설계공모,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(국토교통부 고시)에 따라 용역업체는 시스템에 등재하고 등재된 용역에 대한 발주청(계약, 사업)담당자의 확인·승인완료후 “건설기술용역실적 확인서”를 발급받아 착수보고서와 함께 용역 감독자에게 제출</li> </ul>
<b>심사 및</b>	<b>4. 유관부서 의견수렴</b> - 사업계획 수립시 TF팀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요청 전 유지관리부서 및 관련(유관)부서 의견 조회 등 의견수렴</li> </ul>

확 인 항 목		세 부 내 용
심의전 확 인	등 관련부서 참여여부 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업계획 수립 시 계획부서, 공사부서, 유지관리부서 등 T.F팀 구성은 연하여 계획단계부터 사업참여 유도</li> <li>· 유지관리부서 선정여부 등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검토</li> <li>※ 행정부시장 방침 제73호(13.5.22) : 준공예정시설물 점검관련 매뉴얼 작성</li> </ul>
타 당 성 조사용역	5. 타당성조사 용역시 과업내용서 반영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u>재원조달방안</u> 및 사업의 <u>타당성</u> 재검증 범위 검토</li> <li>·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시 재원조달방안 및 타당성 재검증 검토 시행</li> </ul>
용 역 준공시	6.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이행철저 - 성과품공개 및 자료제공 -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철저히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발주부서 는 '13.7.1부터 준공되는 모든 기술용역 성과품에 대해 「기 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」의 '심사심의관리 &gt; 타당성심사 &gt; 해 당 심사요청 상세화면(상단'성과품 등록'(버튼))을 이용하여 등 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</li> <li>· <u>용역보고서</u> : PDF파일 변환하여 정보소통광장에 등록(준공시)</li> <li>· <u>전체성과품</u> : 인쇄본 3부 및 CD 1부 서울도서관 제출(준공시) →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시 '<u>국가중요시설 및 보안목표시 설</u>' 등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성과 품은 반드시 <u>비공개할 것(용역준공시 용역사 보유 성과품 파기)</u></li> <li>※ 시장방침 제35호(13.5.24) :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련방안</li> </ul>
설계시	7.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건설 기술 용역 추진시 - 지장물 확인철저 - 지장물로 인한 설계변경 최소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u>공사구간내 또는 인접구간의 지하매설물도는</u> <u>우천시 (통합공간정보 서 비스)내 지장물 현황과 비교 검토</u></li> <li>· 아울러 지반조사, 현황 측량시에도 수치지형도를 최대한 이용</li> </ul>
내 진	8. 내진대상 시설물 내진설계 반영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모든 공공건축물(규모관계 없이) 및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국가하천 수문, 교량 · 터널 등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해 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</li> <li>※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작성확인철저(구조기술사)</li> </ul>
정책회의	9. '사업기획 조정 정책회의' 상정 여부 판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 「사업기획 조정 정책회의」 안전 판단 체크리스트'를 검토하여 해당 되는 경우 정책회의 안전 상정(운영부서 : 기술심사담당관)</li> <li>· 대상 : 총사업비 30억원이상 주요 공공건축물 사업</li> </ul>